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1 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김용만・이훈기・복기왕

김용민ㆍ이병진ㆍ모경종

이용우 · 김태년 · 박선원

이광희 • 권칠승 • 이인영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, 희생과 공헌에 따

른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항제2호"를 "제1항제2호 및 제6호"로 한다.

6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79조제1항제 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7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| 제7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|
| 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  | 의 배제) ①            |
|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   |                    |
|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   |                    |
|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  |                    |
|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 |                    |
| 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하지 아니한다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. ~ 5. (생 략)     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6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  |
|                    | 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으로 결정된 사람   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   | 3                  |
|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  |                    |
|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  |                    |

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. 다만, <u>제1항제2호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3. (생 략)
- ④ ~ ⑦ (생 략)

| 제1항제2호           | 및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<u>제6호</u>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|   |
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   |
|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  |   |